인천광역시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60

발의년월일 : 2006. 10.
발의자 : 김성숙 의원 외 24인

□ 제정이유

○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주도의 생활체육을 정착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생활체육의 장려(안 제2조)

- 자발적, 일상적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육성

○ 보조금의 지원(안 제3조)

- 시장은 체육동호인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및 시설확충,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정함.
- 시장은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예산을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인천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및 시설확충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시장은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예산은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제8조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 계 법 령

□ 국민체육진흥법

第3條(體育振興施策 및 勸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體育振興에 관한 施策을 講究하고 國民의 自發的인 體育活動을 勸奬·보호 및 育成하여야 한다.

第8條(地方體育의 振興) ①地方自治團體는 地域住民의 건강과 體力增進을 위하여 건전한 體育活動을 生活化할 수 있도록 施設등 與件을 造成하고 지원하여야 한다.<新設 1989·3·31>

②地方自治團體는 그 行政區域單位로 年 1回이상 體育大會를 직접 開催하거나 體育團體로 하여금 이를 開催하도록 支援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는 職場人體育大會를 年 1回이상 開催하여야 한다.